

이론시험

A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2)	(4)	(2)	(4)	(3)	(2)	(3)	(2)	(1)	(3)	(2)	(1),(4)	(3)	(4)
B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2)	(1),(4)	(3)	(4)	(3)	(2)	(3)	(2)	(1)	(3)	(2)	(4)	(2)	(4)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객관식 문항당 2점)

< 기본전제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한다.
- ②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와 당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③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답] ③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 ③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④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답] ②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3.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 ①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②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③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④ 자본화 대상이 아닌 차입원가

[답] ④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포함된다. 자본화 대상이 아닌 차입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1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증자하여 현금이 입금되었다.
(→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 증자일 현재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5,000,000원이다.)
 - 자본잉여금 15,000,000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 재무상태표상 전기말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 ① 110,000,000원 ② 115,000,000원 ③ 120,000,000원 ④ 135,000,000원

[답] ② 115,000,000원

5. 다음 중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기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은 각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 ③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 ④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 예상되는 세율을 가중평균한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답] ④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활동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한다.
- ② 관련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 대안들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를 말한다.
- ③ 준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말한다.
- ④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답] ③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말한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인 동력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다음의 제조부문인 A부문과 B부문에 배분할 경우 B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보조부문인 동력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0,000원,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0원이다.

구분	A부문	B부문
실제 사용량	100kWh	300kWh
최대 사용가능량	400kWh	400kWh

- ① 2,500,000원
- ② 3,000,000원
- ③ 3,750,000원
- ④ 4,000,000원

[답] ② 3,000,000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분액 : $2,000,000 \text{원} \times 300\text{kWh} / 400\text{kWh} = 1,500,000\text{원}$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분액 : $3,000,000 \text{원} \times 400\text{kWh} / 800\text{kWh} = 1,500,000\text{원}$
 - ∴ B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1,500,000원 +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00원 = 3,000,000원
- ※ 이중배분율법 :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8. 다음과 같이 당사의 외주가공비가 발생하였다. 해당 외주가공비 발생액을 제조부문에 100%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의 당해 외주가공비는 얼마인가?

항목	금액
당월 미지급액	1,000,000원
당월 지급액	3,000,000원
전월 미지급액	1,500,000원
전월 선급액	2,000,000원

- ① 1,500,000원 ② 3,500,000원 ③ 4,500,000원 ④ 5,000,000원

[답] ③ 4,500,000원

$$\begin{aligned} \text{외주가공비} &= 3,000,000\text{원(당월 지급)} - 1,500,000\text{원(전월 미지급)} + 2,000,000\text{원(전월 선급)} + 1,000,000\text{원(당월 미지급)} \\ &= 4,500,000\text{원} \end{aligned}$$

9.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균법은 당기 이전에 착수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방법이다.
- ②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라도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완성품환산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 ④ 비정상공손품에 포함된 원가는 완성품 또는 기말재공품에 배분하지 않는다.

[답] ②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완성품환산량은 항상 동일하다.

10. 세무(?)의 직접노무원가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표준 직접노동시간 : 120,000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500,000원(불리)
- 실제 직접노동시간 : 100,000시간
- 실제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 2,000,000원

- ① 300,000원(유리) ② 300,000원(불리) ③ 200,000원(유리) ④ 200,000원(불리)

[답] ① 300,000원(유리)

- 직접노무원가 단위당 표준원가 : $(2,000,000원 - 500,000원) \div 100,000시간 = 15원/시간$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1,500,000원 - 15원/시간 \times 120,000시간 = 300,000원(유리)$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법에서 정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②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신청할 수 없다.
- ④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받았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답] ③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사업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도 행사유에 해당한다.
-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공급자에게 발급한 경우 신청인은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 세액을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하다.

[답] ② 과세기간의 개시일 → 과세기간의 종료일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 ② 인적공제 판단 시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모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④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답] ①, ④

-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계모, 계부, 생모, 생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 ④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기 ④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④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답]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문제의 제거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 ③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
- ④ 주식발행초과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답] ④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조정 효과는 없다.

실 무 시 험

(주)노아산업(회사코드 : 1210)은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제14기) 회계기간은 2025.1.1. ~ 2025.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본 전 제 >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문제의 풀이와 답안작성은 제시된 문제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입력 시 유의사항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거래 및 채권·채무 관련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전자 여부를 입력하여 반영한다.

문제1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12점)

[1] 01월 17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사용중인 차량운반구를 수리하고 다음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단, 해당 차량운반구는 1,000cc 미만의 경차이다.
(3점)



현금영수증

거래정보			
거래일시	2025-01-17		
승인번호	G202501171212		
거래구분	승인거래		
거래용도	지출증빙		
발급수단번호	127-86-96329		
거래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봉사료	총 거래금액
1,500,000	150,000	0	1,650,000
가맹점 정보			
상호	(주)카드림		
사업자번호	121-85-12343		
대표자명	김길동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7		
● 익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 관련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1)			

[답]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61.현과, 공급가액:1,500,000원, 부가세:150,000원, 공급처명:(주)카드림, 분개: 현금 또는 혼합
 2025.01.17. (차) 차량유지비(판) 1,500,000원 (대) 현금 1,650,000원
 부가세대금금 150,000원

[2] 03월 03일 액면가 50,000,000원인 사채(만기 3년)를 51,000,000원으로 할증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발행비 1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3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5.03.03. (차) 보통예금	51,000,000원	(대) 사채	50,000,000원
		사채할증발행차금	850,000원
		현금	150,000원

[3] 03월 08일 교육청 인허가를 얻은 탑학원에서 학생수송용으로 사용하던 45인승 버스를 당사가 직원 통근버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20,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점)

전자계산서				승인번호	20250308-12345678-87654321		
공 급 자	등록번호	815-96-70575	종사업장 번호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127-86-96329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탑학원	성명		(주)노아산업	성명	최노아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6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27 121호		
	업태	교육 서비스	총목		제조, 도소매	총목	자동차부품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비고			
2025.03.08.		31,000,000원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03	08	45인승 버스 매각				31,000,000원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청구) 함	
31,000,000원		20,000,000원			11,000,000원		

[답]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53.면세, 공급가액:31,000,000원, 부가세: 0 원, 공급처명: 탑학원, 전자: 여, 분개: 혼합
 2025.03.08. (차) 차량운반구 31,000,000원 (대) 미지급금 11,000,000원
 보통예금 20,000,000원

[4] 03월 31일 (주)케이제이더블유(보유 지분율 : 3%)로부터 현금배당금 2,100,000원(배당금 지급결의일 : 3월 31일)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주식배당금으로 (주)케이제이더블유의 주식 10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를 받았다. (3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5.03.31. (차) 보통예금 2,1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100,000원

-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이 수령하는 현금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나, 주식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2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시오. (10점)

[1] 다음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07.01.~09.30.)의 자료이다.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시오. (3점)

- | |
|---|
| • 7월 1일 : 제품을 김씨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공급가액 : 5,000,000원, 부가가치세 : 500,000원) |
| • 8월 1일 : 면세제품(공급가액 : 3,000,000원)을 박씨에게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
| • 9월 1일 : 제품을 조씨에게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공급가액 : 3,500,000원, 부가가치세 : 350,000원) |
| • 제시된 매출 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 |

[답]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제121회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

F4 새로불러오기 F11저장

조회기간 2025년 07월 ~ 2025년 09월 구분 2기 매경

1. 민적사항

상호[법인명]	(주)노아산업	성명[대표자]	최노아	사업등록번호	127-86-96329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7 121호 (경왕동)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구 분	합 계	신용·직불·기명식 선풀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풀 전자지급수단
합 계	12,360,000	8,500,000	3,850,000	
과세 매출분	9,360,000	5,500,000	3,850,000	
면세 매출분	3,000,000	3,000,000		
봉 사 료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세금계산서발급금액	5,500,000	계산서발급금액	3,000,000
-----------	-----------	---------	-----------

Tip 과세 매출분 직불·기명식기명식선풀 전자지급수단

-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5.4.1.~2025.6.30.)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확정신고기간의 거래내역은 모두 전표입력에 반영되어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개는 생략하도록 한다. 전표입력 시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할 것). (7점)

<자료1>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누락분

(1) 직수출

거래처	선적일	환가일	통화	수출액	기준환율		
					선적일	환가일	수출신고일
모아나	2025.02.28.	2025.02.20.	USD	\$160,000	1,410원/\$	1,390원/\$	1,430원/\$

•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 (2)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료 3개월분(2025.1.1.~2025.3.31.)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수취하였으나, 예정신고 시 공제 누락되었다. 공장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27 121호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공장용	면적	264m ²
임대부분	상동 소재지 전부					

2. 계약내용

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일금 육천만 원정 (₩ 60,000,000)
차임	일금 사백만 원정 (₩ 4,000,000)은 매월 말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 2 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4년 07월 0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24개월로 한다.

... 중략 ...

(갑) 임대인 : 고미나 (235-16-95216) (인)

(을) 임차인 : (주)노아산업 (127-86-96329) (인)

<자료2> 확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 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신용카드 과세분 매출 :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 92,000,000원(고정자산 매입분 5,000,000원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수선비 2,3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 확정신고기간의 위 거래에 대한 전표입력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자료3> 기타

- 예정신고 누락분을 제외한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문제에서 제시한 신고서 외 다른 부속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매출전표입력은 날짜별로 각각 작성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75%를 감면받는 것으로 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받지 않기로 한다.

[답]

1. [매입매출전표입력] → 단, 아래의 4건 모두 전표입력 시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할 것.

(1) 2025.02.28.

유형: 16.수출, 공급가액: 222,400,000원, 공급처명: 모아나, 분개: 없음
영세율구분: ①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하며 과세표준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나, 선적일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160,000 \times 1,390 원/\$ = 222,400,000 원$

(2) 2025.01.31.

유형: 51.과세, 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세: 400,000원, 공급처명: 고미나, 전자: 부, 분개: 없음

(3) 2025.02.28.

유형: 51.과세, 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세: 400,000원, 공급처명: 고미나, 전자: 부, 분개: 없음

(4) 2025.03.31.

유형: 51.과세, 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세: 400,000원, 공급처명: 고미나, 전자: 부, 분개: 없음

2. [부가가치세신고서]

구분	금액	세율	세액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2,300,000	230,000
공통매입세액면세등사업분	51		
대손처분받은세액	52		
합계	53	2,300,000	230,000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5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55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56		
대리납부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8		
기타	59		
합계	60		

25. 가산세명세				
사업자미등록등	61		1/100	
세 금	62		1/100	
지연발급 등	63		5/1,000	
지연수취	64		뒤쪽참조	
계산서				
미발급 등				
전자세금	65		3/1,000	
지연전송	66		5/1,000	
발급명세				
세금계산서	67		5/1,000	
합계표	68		3/1,000	
신고	69		뒤쪽	
무신고(일반)	70		뒤쪽	
무신고(부당)				
불성실	71		뒤쪽	
과소 초과환급(일반)	72		뒤쪽	
과소 초과환급(부당)				
납부지연	73		뒤쪽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4	222,400,000	5/1,000	278,000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	75		1/100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	76		1/100	
매입자	77		뒤쪽	
거래계좌 미사용				
납부특례	78		뒤쪽	
거래계좌 지연입금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미제출 · 과다기재	79		5/1,000	
합계	80			278,000

※ 가산세 : 222,400,000원 × 5/1,000 × (1 - 75%) = 278,000원

문제3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8점)

- [1] 당사는 업무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당해 연도 3월 1일에 임차인에게 1년분 임대료 18,000,000원 (2025.3.1.~2026.2.28.)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하고 수령일에 1년분 임대료를 임대료(영업외수익)로 처리하였다. 당기분 임대료를 월할로 계산하여 기말 수정분개를 수행하시오. (2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5.12.31. (차) 임대료(영업외수익) 3,000,000원 (대) 선수수익 3,000,000원
 • $18,000,000 \text{원} \times 2/12 = 3,000,000 \text{원}$

- [2]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기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게 반영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기말에 필요한 단기매매증권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 (2점)

구분	2024년 취득 주식 수량	1주당 취득원가	2024년 기말 1주당 시가	2025년 기중 매도수량	2025년 기말 1주당 시가
단기매매증권	2,000주	@70,000원	@77,000원	500주	@69,000원

[답] 일반전표입력

2025.12.31.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2,000,000원^(주1) (대) 단기매매증권 12,000,000원
^(주1)(2,000주 - 500주) × (@69,000원 - @77,000원) = 12,000,000원

- [3] 당사는 7월 31일 미국 qwer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 \$50,000는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없으며, 환율은 수출선적 당시 1,370원/\$, 결산일 현재 1,400원/\$이다. (2점)

[답] 일반전표입력

2025.12.31. (차) 보통예금 1,500,000원 (대) 외화환산이익 1,500,000원
 • $\$50,000 \times (1,400\text{원}/\$ - 1,370\text{원}/\$) = 1,500,000\text{원}$

- [4] 당사의 제품 재고는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한 감모순실을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기말제품재고액을 반영하시오. (2점)

구분	수량(개)	단가(원)	재고자산가액(원)	비고
장부상 재고	10,000개	1,000원	10,000,000원	감모순실 중 60%는 정상감모,
실사상 재고	9,750개	1,000원	9,750,000원	40%는 비정상감모이다.

[답]

1. [일반전표입력]

2025.12.31. (차) 재고자산감모순실 100,000원 (대) 제품 100,000원
 (적요8 : 타계정으로 대체)

2. [결산자료입력]

• 2. 매출원가 → 9) 당기완성품제조원가 → ⑩ 기말 제품 재고액 9,750,000원 입력 → ④ 전표추가

문제4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1] 다음은 영업부 사원인 신사임(사번 : 2, 입사일 : 2025년 4월 1일)의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전(前) 근무지 자료는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등] 탭, [의료비] 탭, [기부금] 탭, [월세액] 탭에 각각 입력하여 [연말정산입력] 탭에 반영하시오(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제시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8점)

<자료1> 부양가족 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비고
본인	신사임	880520 - 1464516	근로소득(총급여) 6,120만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김애라	911212 - 2143429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일용근로소득 200만원	
부	신복하	561110 - 1021221	소득없음	주거형편상 별거
모	박해윤	580708 - 2524652	소득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녀	신유준	120725 - 3345412	기타소득 100만원	퀴즈 대회 상금, 중학생
자녀	신유혁	150725 - 3445416	소득없음	초등학생

※ 모두 내국인으로 '부(신복하)'를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는 '부'로 작성한다.

<자료2> 전(前) 근무지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로 한다.

· 근무처명 : (주)서울바이오 (809-87-02707)	· 근무기간 : 2025.1.1. ~ 2025.3.31.		
· 총급여액 : 8,100,000원			
· 건강보험료 : 364,500원	· 국민연금보험료 : 287,130원		
· 장기요양보험료 : 37,170원	· 고용보험료 : 72,900원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명세	결정세액	147,300원	14,730원
	기납부세액	218,900원	21,890원
	차감징수세액	△71,600원	△7,160원

<자료3> 연말정산 관련 자료

항목	내용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친(박해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자녀(신유혁) 상해보험료 : 65만원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신유준) 중학교 수업료 : 100만원, 중학교 교복 구입비 : 70만원 모친(박해윤) 장애인 특수교육비 :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신사임) 신용카드 사용액 : 2,0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사용분은 없음) 배우자(김애라) 직불카드 사용액 : 5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사용분은 없음) <p>※ 본인(신사임)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의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다.</p>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김애라)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 30만원 모친(박해윤) 보청기 구입비용 : 150만원 자녀(신유혁) 질병 치료비 :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140만원 수령)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신사임)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부친(신복하) 종교단체 기부금 : 50만원

※ 위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이며,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 기부처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입력하지 않으며, 기부는 모두 금전으로 한다.

<자료4> 월세자료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9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주거용)	면적	84m ²						
임대부분	상동 소재지 전부											
2. 계약내용												
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일금 일억팔천만 원정(₩ 180,000,000)											
차임	일금 육십만 원정(₩ 600,000)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 2 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4년 02월 0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 중략 ...												
(갑) 임대인 : 김한수 (570315-1786529)												
(을) 임차인 : 신사임 (880520-1464516)												

[답]

1.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소득명세] 탭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입력
구분		합계		주(현)		납세조합		종(전) [1/2]		
9.근무처명		(주)노마산업				(주)서울바이오				
9-1.종교관련 종사자		부		부						
10.사업자등록번호		127-86-96329						809-87-02707		
11.근무기간		2025-04-01 ~ 2025-12-31						2025-01-01 ~ 2025-03-31		
12.감면기간										
13-1.급여(급여자료입력)		69,300,000		61,200,000				8,100,000		
13-2.비과세한도초과액										
13-3.과세대상추가(인정상여추가)										
14.상여										
15.인정상여										
15-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5-2.우리사주조합 인출금										
15-3.임원회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15-4.직무발명보상금										
16.계		69,300,000		61,200,000				8,100,000		
18.국외근로										
18-1.야간근로(연240만원)		001								
공 제 보 험 료 명 세	건강보험료(직장)(33)	2,534,040		2,169,540				364,500		
	직장 장기요양보험료(33)	318,070		280,900				37,170		
	고용보험료(33)	623,700		550,800				72,900		
	국민연금보험료(31)	3,041,130		2,754,000				287,130		
	공무원 연금(32) 군인연금(32) 시립학교교직원연금(32) 별정우체국연금(32)									
세 액	기납부세액	소득세 7,725,880		7,578,580				147,300		
	지방소득세 772,560			757,830				14,730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 [부양가족] 탭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입력		
연 월 회 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외국인)번호	나이	소득기준 초과여부	기본공제	세대주 구분	부녀 자	합부 로	결혼 후	장애인 자녀	출산
0	신사임	내	1 880520-1464516	37		본인	세대주					
3	김애라	내	1 911212-2143429	34		배우자						
1	신복하	내	1 561110-1021221	69		60세이상						
1	박해운	내	1 580708-2524652	67		60세이상				1		
4	신유준	내	1 120725-3345412	13		20세이하					○	
4	신유현	내	1 150725-3445416	10		20세이하					○	
합 계 [명]					6				1	2		

※ 기타소득(퀴즈대회 상금)의 기타소득금액은 1,000,000원×(1 - 80%) = 200,000원

3. 보험료

① 박해윤

보험료 등 공제대상금액				
자료구분	국세청간소화	급여/기타	정산	공제대상금액
국민연금_직장				
국민연금_지역				
합 계				
건강보험료-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건강보험료-소득월액(납부)				
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납부)				
합 계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일반				
보장성보험-장애인	1,000,000			1,000,000
합 계	1,000,000			1,000,000

② 신유혁

보험료 등 공제대상금액				
자료구분	국세청간소화	급여/기타	정산	공제대상금액
국민연금_직장				
국민연금_지역				
합 계				
건강보험료-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건강보험료-소득월액(납부)				
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납부)				
합 계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일반	650,000			650,000
보장성보험-장애인				
합 계	650,000			650,000

4. 교육비

① 박해윤

교육비
일반
장애인특수 2,000,000

② 신유준

교육비	
일반	장애인특수
1,500,000	2.초중
	고

5. [신용카드 등] 탭

[제121회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

6. [의료비] 템

7. [기부금] 탭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입력
기부금 입력		기부금 조정							
12.기부자 인적 사항(F2)									
주민등록번호			관계 코드		내·외국인		성명		
880520-1464516			거주자(본인)		내국인		신사임		
561110-1021221			직계존속		내국인		신복하		
구분		9.기부내용		기부처		기부명세			자료 구분
7.유형	8. 코드			10.상호 (법인명)	11.사업자 번호 등	건수	13.기부금합계 금액 (14+15)	14.공제대상 기부금액	15.기부절감금 신청 금액
정치자금	20	금전			100,000	100,000			국세청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입력	
기부금 입력	기부금 조정									
12.기부자 인적 사항(F2)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내·외국인		성명				
880520-1464516		거주자(본인)		내국인		신서임				
561110-1021221		직계존속		내국인		신복하				
구분		9.기부내용		기부처		기부명세				자료 구분
7.유형	8. 코드			10.상호 (법인명)	11.사업자 번호 등	건수	13.기부금합계 금액 (14+15)	14.공제대상 기부금액	15.기부절력금 신청금액	
종교	41	금전	필수 입력	필수 입력		500,000	500,000		국세청	

[제121회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

기부금 공체금액 계산 참조

근로소득금액	56,085,000	정치, 고향기부금외 공제대상금액	500,000	세액공제가능액	2,712,059			
코드	구분	지출액	공체대상금액	공제율1 (15%, 20%)	공제율2 (25%, 30%, 35%)	공제율3 (40%)	소득/세액공제액	공제초과이월액
20	정치자금(10만원 이하)	100,000	100,000				90,909	
20	정치자금(10만원 초과)							
43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43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10	특례기부금 2015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6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7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8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19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0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1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2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3년이월							
10	특례기부금 2024년이월							
10	특례기부금 당기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5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6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7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8년이월							
40	일반기부금(종교외) 2019년이월							
	합계	600,000	600,000	500,000			165,909	

정치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종교외)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종교) 세액공제	75,000		

▶ 기부금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기부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에서 해당년도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 이월(소멸)금액은 판단하여 입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불러오기](#) [공체금액반영](#) [전체삭제](#) [저장](#) [종료\(Esc\)](#)

41	일반기부금(종교) 2020년이월						
41	일반기부금(종교) 2021년이월						
41	일반기부금(종교) 2022년이월						
41	일반기부금(종교) 2023년이월						
41	일반기부금(종교) 2024년이월						
41	일반기부금(종교) 당기	500,000	500,000	500,000		75,000	
	합계	600,000	600,000	500,000		165,909	

정치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종교외)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종교) 세액공제	75,000		

▶ 기부금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기부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에서 해당년도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 이월(소멸)금액은 판단하여 입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불러오기](#) [공체금액반영](#) [전체삭제](#) [저장](#) [종료\(Esc\)](#)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입력	공체금액계산
기부금 입력	기부금 조정									
구분	기부연도	16.기부금액	17.전년도까지 공제된금액	18.공체대상 금액(16-17)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유형	코드					소멸금액	이월금액			
정치자금	20	2025	100,000		100,000	100,000				
종교	41	2025	500,000		500,000	500,000				

8. [월세액] 탭

계속		증도	전체	판리한연말정산 액설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	사번	사원명	감·완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신자원금	연말정산입력				
■ 2	신사임	x x		I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연말정산입력 탭의 70.월세액)													
□				임대인명 (성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 종료일	연간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	김현수	570315-1706529	01파트	84.00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5	2024-02-01 ~ 2026-01-31	7,200,000	7,200,000	1,080,000								

※ 600,000원×12개월 = 7,200,000원

9. [연말정산입력] 탭

판리한연말정산 액설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계속		증도	전체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액	출신자원금	연말정산입력
□ 2	신사임	x x		정산(지급)년월: 2026년 2월 귀속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영수일자: 2026년 2월 28일									
□				구분	지출액	공제금액		구분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				34. 장기주택저당처입금이자상 제 35. 특별소득공제 계	3,475,810			63. 교육비	3,500,000	3,500,000	525,000		
□				36. 차감소득공제 37. 개인연금저축	36,568,060			64. 기부금	600,000	600,000	165,909		
□				38. 소기업·소상 2015년이전가입 공인 공제부금 2016년이후가입				1)정착자금 10만원이하 기부금 10만원초과	100,000	100,000	90,909		
□				39. 주택 청약저축 박 마련저축 주택청약				2)고향사랑 10만원이하 기부금 10만원초과					
□				40. 투자조합자 등 소득공제				3)희망기부금(전액) 4)우리사주조합기부금 5)월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41. 신용카드 등 사용액	25,000,000	1,901,250		6)월반기부금(종교단체) 65. 특별세액공제 계	500,000	500,000	75,000		
□				42. 우리사주조합 일반 등 등 출연금				7)0.월세액 71. 세액공제 계	7,200,000	7,200,000	1,080,000		
□				43. 고용유지증소기업근로자 44. 경기집부자증권저축				72. 결정세액((49)-(54)-(71)) 82. 실효세율(%) [(72/21)]x100			1,027,962		
□				제 4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901,250						1.5		
□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73. 결정세액	1,027,962			74. 종(전)근무지 75. 주(현)근무지	102,796		1,130,758		
□				기납부세액(현)	7,578,580								
□				기납부세액(총전)	147,300			76. 납부특례세액	147,300		162,030		
□				납부세액	-6,697,910			77. 차감징수세액	7,578,580		8,336,410		
□				연말(계속근무자)	1								
□				증도(회사자)							-7,367,670		

[2] 다음 자료는 당사의 6월 급여대장과 사업소득 지급대장의 일부이다.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한 후 국세청 홀택스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단, 당사는 반기별 신고 특례 대상자가 아니다). (2점)

<자료1>

2025년 6월 급여대장					
성명	지급 내용			공제 내용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급여 계	소득세
조민지	3,000,000원			3,000,000원	74,350원
권우진	2,000,000원			2,000,000원	19,520원

<자료2>

사업소득 지급대장						
지급연월 : 2025년 6월						
성명	귀속연월	지급연월일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함상준	2025.06.	2025.06.30.	3,000,000원	90,000원	9,000원	2,901,000원

<전자신고 관련 유의사항>

-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은 2.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12341234"로 입력한다.
-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저장경로는 로컬디스크(C:)이며, 파일명은 "작성연월일.01.t사업자등록번호"이다.

[답]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후 마감

귀속기간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지급기간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신고구분	1.결기신고	차수		
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월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귀속년월	2025년 6월	지급년월	2025년 6월	
일괄납부여부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부	부표 작성	환급신청서 작성	승계명세 작성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기타소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인원	징수세액	월별조정 원금세액	납부세액		
	금융 수입 사업 수입 종교 인연 말 기 타	A01	2	5,000,000 93,870				
		A02						
		A03						
		A04						
		A05						
		A06						
		A10	2	5,000,000 93,870			93,870	
		A21						
		A22						
A20								
A25	1	3,000,000 90,000						
A26								
A30	1	3,000,000 90,000			90,000			
A41								
A43								
A44								
A49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12.전월미환급	13.기환급	14.차감(12-13)	15.일반환급	16.선택재산	금융회사 등	합병 등	18.조정대상환 급(14+15+16+17)	
							19.당월조정 환급세액	
							20.차월이월 환급세액	
							21.환급신청액	

2. 전자신고용 파일 제작

3. 전자신고파일 제출

≡ 원천세
▼ 원천세 신고하기

C:\Windows\Temp\KcLep\20201006_01_11278636323
475ByE

처리내역
변환파일 정보 입력
×

* 오류

- 파일자

- 진행한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파일 생성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진행 중인 검증이 없습니다.
[찾아보기]를 터치하여 파일을 선택 후 [형식검증하기]를 눌러 진행하세요.

형식검증하기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제121회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

고 육 용 Kci en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납부 자급형세서 장려금·연말정산 상담·불복·고충 세무대리
[단] 납세관리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파일변환)

접수내용

사용자ID	사용자명	접수일자	2025-01-06 17:02:30
총 신고건수	1건	정상건수	1건 오류건수 0건

정상체출내용 (단위 : 원) 10건 확인

과세년월	신고서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02506	원천징수이행상황…	정기(확정)	정기신고	(주)노아산업	127869632

1 총1건(1/1)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 세금내역이나 신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제스팅이나 ITN 제작 및 오류거점을 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ITN

닫기 연쇄하기

이전 전자파일 제출하기

총지급액
8,000,000

문제5

(주)고려산업(회사코드 : 1211)은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고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4기)는 2025.1.1.~2025.12.31.이다. [법인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30점) ※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

[작성대상서식]

1. 세금과공과금명세서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세액공제신청서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세무조정 유형과 소득처분이 같은 세무조정일지라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고, 지급처 입력은 생략할 것). (6점)

일자	금액	적요
2025.01.27	600,000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2025년분, 연납)
2025.02.20	90,000원	「관세법」 위반 벌과금
2025.03.19	1,27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2025.07.11	6,200,000원	본사 건물 재산세
2025.08.31	55,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2025.10.09	2,450,000원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2025.11.11	300,000원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금
2025.12.31	148,000원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법정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답]

1.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2. 세무조정

- | | | |
|-----------------------|------------|---------------|
| <손금불산입> 「관세법」 위반 별과금 | 90,000원 | (기 타 사 외 유 출) |
| <손금불산입> 법인지방소득세 | 1,270,000원 | (기 타 사 외 유 출) |
| <손금불산입> 업무 관련 교통사고 별금 | 300,000원 | (기 타 사 외 유 출) |

[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6점)

- 2025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3,000cc)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60,000,000원에 취득하고 업무에 사용중이다. 해당 승용차는 취득가액이 80,000,000원 미만이므로 법인업무용전용번호판 부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승용차는 재무담당이사만 운전가능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2025년 1월 1일에 가입하고 승용차 관련 주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 코드 101, 차종은 승용차, 차량번호 111가1234, 총주행거리 40,000km, 업무관련 주행거리 32,000km 이다.
 - 승용차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산일에 회계처리 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12,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원

- 직전 연도에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당사의 당해 연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용승용차(차량번호 111가1234) 관련비용

항목	손익계산서상의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12,000,000원
유류비	7,000,000원
보험료	1,500,000원
수선비	1,000,000원
자동차세	600,000원
상기 외의 유지비용	500,000원
합계	22,600,000원

[답]

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2.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외사용	4,520,000원	(상)	여)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600,000원	(유)	보 발 생)
• $12,000,000\text{원} \times 80\%(\text{업무사용비율}) - 8,000,000\text{원} = 1,600,000\text{원}$				

[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추가로 반영하시오.

(6점)

※ 2025년 손익계산서 작성은 완료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

-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A씨에게 지급한 가족여행경비 2,000,000원을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과오납으로 인하여 돌려받은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 가산금) 37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70,000,000원을 퇴직급여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퇴직한 임원 B씨의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 시재 3,000,000원을 확인하였다.
-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2,000,000원 중에는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10,000,000원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답]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여비교통비	2,000,000원	(상)	여) ^(주1)
<익금불산입> 법인세 환급 가산금(잡이익)	370,000원	(기)	타)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5,000,000원	(상)	여)
<손금불산입> 현금 시재(잡손실)	3,000,000원	(상)	여)
<손금불산입> 잡손실	500,000원	(기 타 사 외 유 출)	
<익금 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0원	(기)	타)

(주1)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배당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

[4] 당사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기에는 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여 당기에 최초로 공제 적용 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는 [세액공제(1)] 탭과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한다). (6점)

구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합계
2024년	3.08명	5.72명	8.80명
2025년	5.12명	6.00명	11.12명

- 당사는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전환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당기 공제 발생액에 대해서는 이월액이나 소멸 없이 전액 당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답]

1.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 [1.세액공제(1)] 탭

통합고용세액공제				
F3 조정등록 F4 계산내역 CFS 전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세액공제(1)		2.세액공제(2)		1인당 공제금액
구분	1	1	수도권 내 청년 등 중소 기업	2.0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차	2	수도권 밖 청년 등 기계	0.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년	3	계	2.3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들 출업자 후 복지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도	4	청년 등 기계	31,960,000
경력단절여성고용 기업 등에 대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공 제	5	경규직 전환자 기계 중견 기업	1천9백만원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한세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추 가	6	육아휴직 전환자 기계	9백만원
		7	1년도 세액공제액 2년도 세액공제액 3년도 세액공제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31,960,000
		8	합 계	31,960,000
통합고용세액공제				확인(F10) 취소(ESC)
통합고용세액공제(경규직전환)				F4-계산내역 31,960,000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F4-계산내역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F4-계산내역
통합고용세액공제(경규직전환)				전환인원수×1인당 일정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인원수입력

※ 청년등 상시근로자 : 5.12명 - 3.08명 = 2.04명

※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 6.00명 - 5.72명 = 0.28명

(2) [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

2. [세액공제신청서]

☰ CFS 전체 삭제	F6 구분조회	F7 과세연도	F8 신청일	F11 저장	F12 불리오기
(130)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131)전기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132)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133)의약품질관련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8	
(134)신상장기술 사용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8	
(135)경상판텐츠 제작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136)경상판텐츠 제작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영 제22조의11제6항	18B	
(137)도장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138)문화산업문화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5조의 7	187	
(139)산림수요맞춤형고등학교들 을업자를 범역이후로 복직시간 증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43항	143	
(140)경찰단별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46항	14X	
(141)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142)고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143)청년고용률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144)고용률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145)종합고용세 약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31,960,000
(146)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영 제26조의8제11항	184	31,960,000
(147)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영 제26조의8제11항	185	
(148)2금융유지증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149)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150)임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O	
(151)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9B	
(15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6항	10B	
(153)설계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제14항	18Q	
(15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A	
(15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부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156)㈜3자 플랫폼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157)㈜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15제5항	18E	
(158)㈜입증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159)국유재산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160)대학 및출렁교육비를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161)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5]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프로그램 해당 메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입력 시 기초자료와 당기 중 변동사항을 모두 직접 입력하시오. (6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1주의 금액	금 5,000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총수 1,000,000주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 월 일
		등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금 5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2025.04.18. 변경
보통주식 20,000주	금 100,000,000 원	2025.04.18. 등기

2. 주주내역

(1) 2024년 말 주주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관계	주식수
김한발	660813-1953116	본인	5,000주
김두발	690327-1082111	없음	5,000주

(2) 2025년 말 주주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관계	주식수
김한발	660813-1953116	본인	10,000주
김두발	690327-1082111	없음	7,000주
김세발	691115-1173526	없음	3,000주

- 김한발과 김두발은 2025.4.18.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유상증자는 액면가액으로 진행되었다.
- 김두발은 2025.11.15. 본인의 주식 3,000주를 김세발에게 양도하였다. 김두발의 해당 3,000주 취득일은 2024.1.1.이다.

[답]

1. 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121회 전산세무1급 확정답안]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예제 유의사항					
1 2 3 4 5	1/5 번째 명세서	상장변경일	합병·분할일	사업년도	2025-01-01 ~ 2025-12-31 신고방법 0:전자, 1:매체, 2:신고안함				
1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 ?		주권상장여부		3 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장 무액면주식발행여부 2 1:여, 2:부					
2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의 차이내용									
차액내용	구 분	기 초	기 말	구 분	기 초	기 말			
총주식수		10,000 주	20,000 주	총주식수		10,000 주	20,000 주		
입력누계		10,000 주	20,000 주	1주당 액면가액		5,000 원	5,000 원		
총주식수와의 차이		주	주	자본금		50,000,000 원	100,000,000 원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						회원정렬: 구 분 순	지분율재계산 EXCEL자료업로드 EXCEL자료다운		
No	설명(법인명)	구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1	김화발	2.개인		3,000 주		3,000 주			
2	김두발	2.개인				15 %			
3	김세발	2.개인	100.00 %			100.00 %			
4									
						양 수	3,000 주	양 도	주
						유상증자	주		주
						무상증자	주		주
						상 속	주	상 속	주
						증 여	주	증 여	주
						출자전환	주 소	감 자	주
						실명전환	주	실명전환	주
						기 타	주	기 타	주
지배주주와의관계 09 기타									
[주주 기타 인적사항(전자신고(매체)수록 사항 아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 스	-	-	-
보유여부 1:여, 2:부 자기주식 수(주)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3.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예제 유의사항	
1/5	번째 명세서	상장변경일	합병·분할일	사업년도	
1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1:특정시설물 이동권 부여 2: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3: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4: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중소) 5: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일반) 6:비상장법인(중소) 7:비상장법인(일반)			
No	주식수(출자좌수)감소자	No	주식(출자좌수)증가자	주식·출자지분 변동내용	
설명(법인명)	등록번호	설명(법인명)	등록번호	거주국코드	처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출자좌수)
1 김두발	690327-1082111	1 양도 김세발	691115-1173526	KR 대한민국	2025-11-15 2024-01-01 3,000
처분 주식 수 계 처분 주식 수 차이 3,000 0					
기초 주식수(주) 기초 지분율(%) 기말 주식수(주) 기말 지분율(%) 5,000 50 7,000 35					
전자					
1=양도, 2=상속, 3=증여, 4=환원, 5=기타					

이론과 실무문제의 답을 모두 입력한 후 **답안저장 (USB로 저장)** 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USB메모리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